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것을 말하며, 이하 "다이렉트 banking"이라 함)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의 다이렉트 banking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다이렉트 banking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및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한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HSBC 다이렉트회원약관, 공인인증서비스이용약관, 기타해당업무 및 서비스의 개별 약관 및 약정서,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이렉트 banking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다이렉트 banking은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계좌해지, 수익증권환매, 사고신고, 상담, 안내, 이용자정보변경 등이며 구체적인 종류는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전자적 장치(이하 "전화 또는 폰banking"이라 함)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계좌이체 한도) ①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별표1>의 최고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개별 이체한도를 설정하고 폰banking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도에 따라 최고 이체한도를 등록한 후 등록된 개별 이체 한도 내에서 이체거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 또는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은행이 임의로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폰banking을 통하여 직접 감액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는 은행에서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하도록 신청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폰banking을 통해 직접 증액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기타 관계 규정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은행의 최고이체한도 및 이용자의 개별이체한도는 해당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약정된다.

제6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다이렉트 banking 이용시마다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 항목을 입력했을 때 입력된 내용이 은행에 사전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직원을 통한 폰banking거래시 이용자가 본인임이 의심스러운 경우 등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은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005-13(2019.04.15)]

1. 폰뱅킹 : 폰뱅킹 비밀번호 (PIN)

제7조 (출금계좌)

-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제4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 한다.
- ②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용자 본인명의로 원화 또는 외화예금에 한한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기본약관 제12조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①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에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전까지 현금화된 해당 금액이 출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로 한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는 하지 않는다.
- ②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예약이체를 지정하였던 시점의 선·후에 따라 처리하는 등의 은행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연결 계좌의 개설과 해지)

- ① 삭제
- ② 신규 개설 한 연결 계좌의 해지(중도해지포함)는 다이렉트 뱅킹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해지된 자금은 근거 계좌로 이체 되어야한다.
- ③ 다이렉트 뱅킹을 통해 개설한 근거 계좌 및 연결 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하지않으며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 ④ 삭제.

제10조 (다이렉트 뱅킹의 이용)

- ①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폰뱅킹)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전화 또는 폰뱅킹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 ⑥ 다이렉트 뱅킹에서의 비밀번호 등의 등록은 기본약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을 달리 정하여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다이렉트 banking 이용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다이렉트 banking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
- ② 폰뱅킹 비밀번호를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 ③ 제2항 외 기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은행이 정한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 ④ 영업시간 이후, 휴일, 금융결제원 전산망 확인시간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의 경우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한다.)
- 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등 기타 이용자가 약관 등을 위반함으로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⑥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또는 입출금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단,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은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폰뱅킹을 통한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 ⑦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조, 변조, 도용 등 사기거래라고 의심될 때
- ⑧ 삭제

제12조 (이용 수수료)

- ① 은행은 다이렉트 banking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다이렉트 banking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인출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안내한다.
- ④ 수수료 변경 시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 1 개월 전에 안내하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

- ①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폰뱅킹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각종 비밀번호의 분실, 잠김, 누설, 도난, 멸실, 훼손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은행이 요구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이용자 본인이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접근장치,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잠김해제, 활성화 등은 폰뱅킹을 통해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후 가능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다.

제14조 (다이렉트 banking 계약의 해지)

- ① 제7조의 출금계좌가 1개인 고객이 해당 출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다이렉트 banking계약은 해지된다.
- ② 출금계좌가 1개만 등록된 이용자로서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에 따라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이렉트 banking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용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이렉트 banking을 해지하더라도 은행이 수수료 자동이체계좌의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의 효력발생일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최대이체한도

(단위: 원)

구분	이체한도	
	1회	1일
폰뱅킹	50,000,000	250,000,000